

대전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가단1175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C의 지분만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국 2018년 1월 26.일 제4223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D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18. 400만 원(이자 약정이율 29.9%)로 하여 대출받았다. 그런데 C이 위 원리금의 이행을 하지 않던 중 기한이익 상실로 위 대출약정은 해지되었고, 2020. 6. 3. 기준 C의 채무금은 원리금 합계 8,471,033원이 되었다. 그런데 D 주식회사는 위 원리금에 대한 채권을 2016. 6. 27.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C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8.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자신의 모친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의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가 2017. 11. 18. 사망하자 그 피상속인인 C은 2017. 12. 21. 대전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8. 1. 9. 위 신고가 수리된 점(대전가정법원 2017느단1878호, 이하 ‘이 사건 상속포기’라고 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E가 사망하자, 2018. 1. 26. 위 상속포기에 따른 C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B, F, G 사이에 B를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로 보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고, 이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상속재산분할협약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C의 이 사건 상속포기와 견련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근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84.96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종류 : 1. 대전광역시 중구 대 4446.8㎡

2. 대전광역시 중구 대 3055㎡

대지권의 종류 : 1.2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7501.8분의 48.306

-이상-